

【 3 】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년월일 : 1997. 7. 24.

제 안 자 : 이상원의원외 2인

제안이유

경기도 의회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한다하여 이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붙임 참조

결 의 문

우리 양주군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번 경기도의회가 우리군을 포함한 도내 각 시·군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시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경기도의회 의장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도비보조사업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만 해당 기초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저의에 대하여 유감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매우 의심되며.
2.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하였던 사항임에도 기초의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경기도의회가 진정 도민을 위한 의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국정감사 수용불가 입장을 즐기차게 견지해오던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 있는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4. 각종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내무부, 기초의회 등에서 연중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의 현 운영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부정한 채 금번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조사경비는 도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므로 이같은 발상은 도저히 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양주군 의회에서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여하한 구실로도 실현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자 이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경기도의회 스스로 의회의 위상과 도민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997. 7. 26.

양주군의회의원일동

‘지방화·세계화로 고향발전·나라발전’

양주군

문서번호 기감13130~ 427

시행일자 1997. 7. 22

(경우)

받음 양주군의회 의장

참조 사무과장

선 결	의 상	지 시
접	일자 시간	결 재
수	번호 528	과 공
처리과	의회	과 장
담당자		인

제목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통보

1. 경기도의회 의사13130~794 ('97.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산하 시·군의 도비 보조금 예산집행 및 운영내용 등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사본 1부 끝.

양주군



송신자 110-02
수신자 1812

경기도의회

441-08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 전화 0331) 254-8507 / Fax (행) 5098

문서번호 의사 13130-794

시행일자 1997. 7. 18. ()

받 육 : 각 시장, 군수

참 조 :

선 결	금	수	지	
보	준		시	
접	일자	1997. 7. 18.	결	부
수	번호	11944(193)	재	군
	처리 과		공	
	담당자	이운국	람	계장
				3700

제 목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통보.

1.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2. 경기도 산하 시, 군의 도비보조금 예산집행 및 운용 내용 등에 대하여 경기도
의회 도비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별첨과 같이 실시하고자 통보하오니
시장, 군수께서는 조사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부. 끝.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I. 개요

1. 조사의 목적

경기도 산하 시·군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운용내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의 현황을 조사하여 도비보조금이 보조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참고하여 도비보조 예산의 시기성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2. 조사활동기간 : '97. 7. 9 ~ 10. 20

가. 시·군별 도비지원내역 등 자료작성 및 분석 : '97. 7. 9 ~ 8. 20

나. 사업장별 현지확인 : '97. 8. 21 ~ 8. 31

다. 시장, 군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 : '97. 9. 4 ~ 9. 30

라. 본회의 보고서(안) 작성 : '97. 10. 1 ~ 10. 20

3. 조사대상기관 :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4. 조사인원 : 31명

5. 조사사무 범위 :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경기도 산하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에 관한 사업

II. 세부추진계획

1. 시·군별 도비지원내역 등 자료작성 및 분석 : '97. 7. 9 ~ 8. 20

가. 도 집행부에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기한 : '97. 7. 9 ~ 8. 13

- 요구대상: 도비 지원규모 ('95~'96년)가 시·군별 단위사업별
투자사업 5억 이상 및 경상사업비 1억 이상

○ 요구목록

- 도비보조금 예산 집행현황(서식 별첨)
- 이월(계속비, 명시, 사고)사업내역 및 사유(서식 별첨)
- 지원된 사업중 전액반납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지원액, 반납사유)
- 97년 6월말 현재 미착공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지원액, 미착공사유)
- 결산서 및 부속서류 ('94~'96)
- 당초예산대비 예산증감 사업현황 ('95~'96)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도비 당초예산액, 도비 최종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 투자심사 분석자료 ('95~'96)

나. 조사반별 자료검토 및 출장계획수립 : 8. 19일한

- 자료검토를 통하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

○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준비

- (현장 조사반 편성) -

- 5개반으로 조직운영하되 1개반은 6명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로 각 전문위원 및 6급 공무원을 지정
- 반편성시 지역구 배제를 원칙으로 함.

※ 현장 조사반 구성현황 : 별첨

2. 자료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현지확인 : '97. 8. 21~8. 31

가. 현지확인 대상

-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 현장
- 기타 의원이 확인을 요하는 사업장

나. 조사항목에 의한 조사실시

- (현장 조사항목) -

-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사업추진 상황(공정 등)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진사유와 대책(향후 추진계획)
- 공사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
- 수해방비시설 설치여부 및 현장 안정관리 상태
- 기타(사업착수 여부, 사업장 위치변경 여부)

다.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조사 사업장명,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항목, 시정 및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공사장 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 또한 조사반별 총괄분 작성

3. 시장, 군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97. 9. 4~9. 30

가. 시·군별 문제점 사업위주로 시장, 군수 보고(20분 범위내)

나. 문제점 위주로 시·군별 질의·답변 실시

(시장·군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시 회의진행 순서)

- 개회 →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증인선서 → 조사대상 기관장 인사 → 조사관련 업무보고(시장, 군수) → 조사반장 현지확인 결과 요약보고 → 질의·답변 → 산회

* 시장, 군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일정 : 별첨

4. 본회의 보고서 작성 : '97. 10. 1~10. 20

가. 각조사반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서(안)에 대한 종합토
 ○ 반납조치 등 필요조치사항 구분
 ○ 해당기관의 시정요구안 작성 등

III. 행정사항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시장, 군수 등 관계 공무원
- 필요시 건설공사 관련 공사시행자 및 인근주민
- 기타 참고인

2. 조사보조 공무원 차출요구

- 본 조사특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별 업무보조자로 전문
위원 및 6급 공무원 지원요구

3. 시·군과의 사전 업무협조

첨부 : 1. 현장조사반 구성현황 1부.

2. 시장, 군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일정 1부.

3. 시군별 도비지원현황 작성 서식 1부.

4. 계속비(명시, 사고) 이월 및 반납사유서 서식 1부.

* 본 계획은 특위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 1)

현장조사반 구성현황

구 분	대 상 시 군	반 장	반 원	업무보조
1반	수원, 평택, 오산 용인, 안성, 이천		조치영, 이상락, 백대식 윤 수, 정인봉, 박용희	
2반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여주		황교선, 이재혁, 신광식 노시범, 고은실, 박효녕	
3반	의정부, 동두천 연천, 가평, 포천 양주		이성근, 최종원, 문부춘 강대기, 민명기, 윤동욱	
4반	안양, 시흥,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이윤종, 이찬혁, 하미용 신우근, 김재상, 김영근	
5반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김포, 파주		백일산, 이재완, 김동식 장현수, 오세창, 정태호	

※ 반장은 반별 위원증에서 자체적으로 선출

(별첨 2)

시장·군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일정

일자	대상 시군		비고
	오전	오후	
'97. 9. 4	수원시	성남시	오전 10:00~12:30 중식 12:30~14:00 오후 14:00~16:30
9. 5	의정부시	안양시	
9. 8	부천시	광명시	
9. 9	평택시	동두천시	
9. 10	안산시	고양시	
9. 11	과천시	구리시	
9. 12	남양주시	오산시	
9. 18	시흥시	군포시	
9. 19	의왕시	하남시	
9. 22	용인시	파주시	
9. 23	이천시	양주군	
9. 24	여주군	화성군	
9. 25	광주군	연천군	
9. 26	포천군	가평군	
9. 29	양평군	안성군	
9. 30	김포군		

성명서

우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행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천명하는 바이다.

1.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우리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수차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2일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도의회는 도비보조사업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만 한하여 해당 기초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정, 도비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였다는데 대하여 배신과 분노를 느끼며 행정사무조사의 실행을 즉각 중지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는 감사원, 내무부, 도, 기초의회가 해당 시군에 대하여 연중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부정한 채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5천2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계층구조가 중복되어 있어 국가 경쟁력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3. 도의회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상대로 일시에 이를 실행한다는 것은 해당 시군의 행정낭비와 업무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도비보조사업(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시군에서 도지사에게 제반 보고서가 제출되는 바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도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 31개 시군의 현황과 문제점을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흔번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는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저의가 개재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31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4. 도비라는 성격은 시군에서 주민의 혈세가 모여 이를 다시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거나 도비가 꼭 보조되어야 할 사업에 이를 배분하는 것으로서 도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도의 자금은 아니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하려는 것은 이치에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은 시군에 대한 조사에 앞서 도자체를 조사하여 과연 31개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의 배분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었느냐 하는 점에 조사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31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사가 시군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될 경우 초래될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며 엄중한 항의와 함께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 7월 19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